

고 성 군 공 인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의안번호 제678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2. 5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2. 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1. 3. 24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안이유

- 공인의 등록, 날인 등 현행 조례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이후 시행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전자공인과 관련하여 공인의 관리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 인터넷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내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함.

3. 주요골자

가. 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나.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다. 공인날인에 규정 신설(안 제15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이후 시행하고 있는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여타 모든 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공인날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공인관리에 관하여 행정내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1. 3.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